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http://www.motie.go.kr		

2022년 2월 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3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28.(금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이상현 주무관(044-203-5233)

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2.3(목) 국무회의 의결

-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
-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

□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『**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**』 일부 개정령안이 **2.3(목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.

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**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,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**이다.

* 자가소비용직수입자: 자기가 발전용·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

○ 도시가스사업법(제40조 및 제41조)에서 위임한 **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(동법 시행령 제20조) 및 보고(동법 시행령 제23조)** 규정을 신설함으로써,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.

▶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(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)
①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, ②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, ③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·시기, ④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·교환, ⑤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

▶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고(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)
①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·현황, ②조정명령의 이행, ③수입계획·실적, ④저장시설 이용계획·실적, ⑤용도별 사용 실적, ⑥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

○ 또한, **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**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, **선박용천연가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**을 마련하였다.

□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,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**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**되고 있다.

* 민간직수입 물량 비중 : ('18) 13.9% → ('19) 17.8% → **('20) 22.1%**

○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**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**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**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**('21.8,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)한 바 있다.

○ 이번 **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**규정 신설 또한 「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」('21.4)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 **탄소중립**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**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**되는 상황 속에서 **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**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한편,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('21.12)을 통해 **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**한데 이어, 이번 개정을 통해 **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**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**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상현 주무관(☎ 044-203-52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